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863호 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5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이정범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3월 4일 |

#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범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6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: 이정범 · 유상용 · 김성대  
김정일 · 박병천 · 박봉순  
박진희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1조의 '통합교육'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5호)  
나.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
(안 제4조제1항제5호)  
다.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7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 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 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

##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고려한 특수교육환경**”을 “**고려하여 통합된 특수교육환경**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**통합교육**”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**통합교육운영에 관한 사항**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**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**

제9조제1항 중 “**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**”을 “**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**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<br>내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<br>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 등<br>을 <u>고려한 특수교육환경</u> 제공에<br>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<br>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<br>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<br>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 <u>고려하여 통합된 특수교육환경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<br>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~ 4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<br>1. ~ 4. (현행과 같음)<br>5. <u>“통합교육”이란 법 제2조제6</u><br><u>호에 따른 교육 말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<br>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다음<br>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<br>교육발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<br>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<br>립·운영하여야 한다.<br>1. ~ 4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5. ~ 10. (생략) | 제4조(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<br>수립·시행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1. ~ 4. (현행과 같음)<br>5. <u>통합교육운영에 관한 사항</u><br>6. ~ 11. (현행 제5호부터 제10<br>호까지와 같음) |

② (생 략)

제7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제9조(실태조사 등)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제9조(실태조사 등) ① -----

-----

--- 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-----

-----

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

## 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[시행 2023. 4. 19.] [법률 제18992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·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3. 21., 2021. 3. 23., 2021. 12. 28., 2024. 2. 27.>

1. “특수교육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특수교육 관련서비스”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·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· 가족지원 · 치료지원 · 지원인력배치 · 보조공학기기지원 · 학습보조기기지원 ·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.
3. “특수교육대상자”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4. “특수교육교원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5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 ·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6. “통합교육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· 장애정도에

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7. “개별화교육”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·교육방법·교육내용·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8. “순회교육”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, 가정 또는 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9. “진로 및 직업교육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·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10. “특수교육기관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(전공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.
11. “특수학급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.
- 11의2. “통합학급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.
12. “각급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**제21조(통합교육)**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, 교육과정의 조정, 제28조에 따른 지원

인력의 배치, 교구·학습보조기·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 2. 27.]

## 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약칭: 특수교육법 시행령)

[시행 2023. 4. 19.] [대통령령 제33406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제5조(교원의 자질 향상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(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,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16조(통합교육을 위한 시설·설비 등)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, 세면장·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·정도 및 교육활동



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,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·대체기구 등의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